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 2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2월 10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5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(2011년 2월 24일)  
상정 의결

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도시국장 오상균)

### 가. 제안이유

- 유가 급등,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청소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,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므로,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「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」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안

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	인상율	
		현 행	개정안		
분뇨 요금	10 L	128원	140원	9%	
개인하수 처리시설	기본요금	750 L 까지	18,710원	21,140원	13%
	초과요금	100 L 당	1,320원	1,490원	13%

(안 제7조제1항의 [별표])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현영)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[별표])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인상 조정코자 제출된 조례안 임.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10ℓ 당 “128원” 을 “140원” 으로 인상하고,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기본 부과금액(750ℓ 까지) “18,710원” 을 “21,140원” 으로, 초과 부과금액(100ℓ 당) “1,320원” 을 “1,490원” 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-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04년 3월 23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유류비와 물가인상 등 수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,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.
- 수수료 인상안은 최근 4년간 개정을 추진한 서울시 18개 자치구 수수료 현황을 참작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신중을 기해 조정한 것으로 보여짐.
- 그러나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고, 타 수수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4. 修正案의 要旨

#### 가. 수정이유

- 「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」 인상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, 최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물가안정 시책 등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시기를 늦추고자 수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 를  
“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 로 한다.(안 부칙)

### 5. 審査結課 : 修正案 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46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1.2.24.

제안자 : 이재형 의원

## 1. 수정이유

「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」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, 최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물가안정 시책 등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시기를 늦추고자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 를

“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 로 한다.(안 부칙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 
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 을 “2011년 9월 1일” 로 한다.

# 수정안의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[별표]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	<p>[별표]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..... <u>2011년 9월 1일</u> .....</p>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유가급등,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청소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,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므로, 구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「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」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물가 변동에 따라 분뇨 수집·운반 시 수수료(10ℓ당)를 “128원”에서 “140원”으로 인상하고,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기본 부과금액(750ℓ까지) “18,710원”을 “21,140원”으로, 초과 부과금액(100ℓ당) “1,320원”을 “1,490원”으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하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필요없음

라. 기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10.12.23.~2011.1.12.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 대상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##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

구 분		부 과 기 준	부 과 금 액	
분 뇨		10ℓ	140원	
개인 하수 처리 시설	기 본	750ℓ까지	21,140원	
	초 과	100ℓ당	1,490원	
	할증	야간 및 공휴일	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7.0%
		지하2층이하	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5.0%

※ 지하할증 :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

※ 야간할증 : 야간 청소시간은 18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] 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(제조제항 관련)				[별표] 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준			
		구 분	부 과 기 준	부과금액			비 고
		분 노	10ℓ	128원			
개인 하수	기 분	750ℓ까지	18,710원				
	초 과	100ℓ당	1,320원				
처리 시설	할증	야간 및 공휴일	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7.0%			
		지하2층 이하	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5.0%			
※ 지하할증 :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 은 할증요금 제외				※ 지하할증 :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 은 할증요금 제외			
※ 야간할증 : 야간 청소시간은 18:00부터 다음 날 06:00까지				※ 야간할증 : 야간 청소시간은 18:00부터 다음 날 06:00까지			